

제 호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

[]취소
[]효력정지
[]경고

처분 통지서

성명	생년월일
----	------

주소

면허 종류 및 번호	조종면허 종류	조종면허 번호
행정처분 결정내용	취소처분 년 월 일	
	효력정지처분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(일간)	
	경고처분 년 월 일	

사유

1.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2.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당 조종면허증을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서장

직인

유의사항

1.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.
2.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취소 또는 효력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